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2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4월 8일

나. 발 의 자: 오현숙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1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4.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오현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안 제3조제1호)
-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신설 (안 제13조제3항~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등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하여 청년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제1호에서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2020.8.5.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적용받는 청년의 기준을 「청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음.
 -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에서 3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변경되었음.
 - 안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에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4항에 청년 활동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시행,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서울시의 청년활동비 등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

조 제4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바, 청년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되어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에게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에게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여 코로나19 극복의지를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부에서는 지원 대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후속 절차 추진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6
----------	-----

발의년월일: 2021년 4월 8일

발 의 자: 오현숙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등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호)
- 나.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신설(안 제13조제3항~제4항)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 나. 입법예고 : 2021. 4. 8. ~ 4.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청년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회를”을 “기회 및 구직활동을”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을 “청년”으로, “범위”를 “범위 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
1. “청년”이란 「 <u>청년고용촉진특별법</u>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1. ----- 「 <u>청년기본법</u> 」----- -----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u>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u><신 설></u>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기회 및 구직활동을</u> ----- <u>청년</u> ----- ----- ----- <u>범위 내</u> ----- -----. ④ <u>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u> 1. <u>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u>

	<u>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u> <u>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u>
--	---